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1497 |
|----------|------|

2020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5월 22일, 장인홍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인홍 의원)

### 1. 제안이유

-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소셜 미디어 등의 이용 증가로 실내 생활 위주의 개인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장인홍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97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sup>1)</sup>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sup>2)</sup>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sup>3)</sup> 단체를 말합니다.

- 이와 같은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학교 업무 경감 정책에 따라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인정 종료’를 예고하고<sup>4)</sup>, 2019년에는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제외<sup>5)</sup> 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는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청소년단체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활동해 왔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단체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 업무로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활동으로 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청소년단체에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예산을 2018년 대비 약 200% 증액하였으며, 2020년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운영비를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바,

동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단체 운영 방식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청소년단체가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

3) 「여성가족부 고시, 2005.4.8. 제정」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 (2018년 7월 31일)

5) 서울특별시교육청(2019.2.).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안내’

**[표1]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사업 예산 현황 (2018년~2020년)**

| 사업명                                | 2020년<br>예산액   | 2019년<br>예산액   | 2018년<br>예산액  |
|------------------------------------|----------------|----------------|---------------|
| 계                                  | <b>547,800</b> | <b>202,950</b> | 97,500        |
| 청소년단체 <sup>6)</sup><br>민간이전 보조금 지원 | 198,000        | <b>198,750</b> | <b>97,500</b> |
| 학교자율청소년단체<br>운영비                   | 350,000        | -              | -             |
| 청소년단체활성화<br>지원회의                   | 2,800          | 4,200          | -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규정으로 안 제 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칙규정으로는 안 제6조에서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

6) 서울시교육청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 15개 단체

|                       |              |
|-----------------------|--------------|
|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서울본부 |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
| 세계화교육문화재단GENY단        |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
|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
| 한국스카우트서울남부연맹          |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
| 한국시민자원봉사회청소년봉사단연맹     | 한국119소년단연맹   |
| 피라미타청소년연합회            | 국제교유문화진흥원    |
|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 서울특별시4-H본부   |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

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예산 등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은 이미 「청소년 기본법」 제29조7)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48조8)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학교교육과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효과

---

7)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청소년 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3)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해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sup>9)</sup>,

이미 서울시는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다양한 청소년시설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1〕).

○ 따라서 동 조항에서 청소년단체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지역 중심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995, 2020.05.29.).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청소년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확대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청소년단체 사업 다양화
- 청소년단체 전문성 확보 및 일선 학교와의 연계 추진
- 지역내 협력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획득 역량 배양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사회성, 창의력 등을 계발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